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문화통상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40조의4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0명(4급 3명, 4·5급 2명, 5급 16명, 6급 16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인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을 “4명(6급 3명, 7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5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당) 1명, 행정주사 2명]을 “18명(4급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관 2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으로, “나군(국제교류 담당) 5명, 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 담당) 3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 1명(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담당)]”을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8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수언어를 담당하는 1명(6급)”을 “2명(6급 1명, 학예연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7조제7항 전단 중 “도서관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2명(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세종도서관 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 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보 1명)”을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을 “별표 7의 정원 중 3명(6급 1명, 학예연구관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학예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중 8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사서주사보)”를 “중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으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1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를 삭제하며, 서기관 23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6”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2”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2”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1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를 삭제하며, 서기관 23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6”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2”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2”를 삭제한다.

별표 3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삭제한다.

별표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별표 5 서기관 10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서기

관 또는 사서사무관 1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서기관 10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1”를 신설하고,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별표 7 서기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별표 7의2 서기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별표 8 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별표 8의2 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별표 8의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별표 16의2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u> <u>또는 서기관</u> ----.
제7조(기획조정실) ① ~ ④ (생략) ⑤ 기획조정실에 기획혁신담당관 · 재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데이터정책팀장 각 1명을 두되, 기획혁신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데이터정책팀장은 서기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 ⑫ (생략)	제7조(기획조정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u>으로</u> ----- ----- ----- ----- ----- -----.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정책과 · 국어정책과 · 전통문화과 · 국제문화과 · 예술정책과 · 공연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전통예술과 · 시각예술디자인과
· 예술인지원팀 · 지역문화정책
과 · 문화기반과 · 도서관정책기
획단 · 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문화정책과장 · 국제문화과장 ·
예술정책과장 · 공연전통예술과
장 · 지역문화정책과장 · 도서관
정책기획단장 및 문화예술교육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
로, 국어정책과장 및 문화기반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
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으로 보하고, 예술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
한다.

⑦ ~ ⑱ (생략)

제10조(국민소통실) ① ~ ⑤ (생략)

⑥ 국민소통실에 소통정책과 · 소통협력과 · 소통지원과 · 콘텐츠기획과 · 여론과 · 분석과 · 디지털소통정책과 · 디지털소통기획과 · 정책포털과 · 디지털소통제작과를 두되, 소통정책과장 ·

여론과장 · 소통협력과장 · 소통
지원과장 및 콘텐츠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
석과장 · 디지털소통정책과장 ·
디지털소통기획과장 · 디지털소
통제작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
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⑩ (생략)

제11조(콘텐츠정책국) ① (생략)

② 콘텐츠정책국에 문화산업정
책과 · 영상콘텐츠산업과 · 게임
콘텐츠산업과 · 대중문화산업과
및 한류지원협력과를 두되, 문
화산업정책과장 및 게임콘텐츠
산업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
츠산업과장 및 대중문화산업과
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
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
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제12조(저작권국) ① (생략)

② 저작권국에 저작권정책과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콘텐츠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 · 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저작권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저작권산업과 · 저작권보호과 · 문화통상협력과를 두되, 저작권 정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저작권산업과장 및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문화통상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13조(미디어정책국) ① (생략)

② 미디어정책국에 미디어정책과 · 방송영상광고과 · 출판인쇄독서진흥과를 두되, 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14조(체육국) ① ~ ③ (생략)

④ 체육국에 체육정책과 · 체육진흥과 · 스포츠산업과 · 국제체육과 · 장애인체육과 및 스포츠유산팀을 두며, 체육정책과장,

----- 부이사관 · 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미디어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체육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스포츠유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⑩ (생략)

제15조(관광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관광정책국에 관광정책과·국내관광진흥과·국제관광과·관광기반과·관광산업정책과·융합관광산업과 및 관광개발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 국제관광과장 및 관광기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내관광진흥과장, 관광산업정책과장, 융합관광산업과장 및 관광개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⑪ (생략)

제19조(사무국) ① (생략)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관광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9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0조(행정운영단) ① (생략)

② 행정운영단에 행정지원과·디지털박물관과·시설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박물관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생략)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

-----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

----- 과

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

무관-----.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운영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

기술서기관으로-----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30조(지식정보관리부) ① (생략)

② 지식정보관리부에 장서개발과·온라인자료과·국가서지과 및 고문헌과를 두며, 장서개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온라인자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가서지과장은 서기관으로, 고문헌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30조의2(지식정보운영부) ① (생략)

② 지식정보운영부에 디지털정보기획과·지식정보서비스과 및 정보기술기반과를 두며, 디지털정보기획과장·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기술기반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지식정보관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지식정보운영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생략)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기획운영과·해외문화홍보사업과·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외신협력과 및 외신분석팀을 두며, 기획운영과장 및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및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외신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제36조의2(기획운영단) ① (생략)

② 기획운영단에 기획관리과·장악과·국악진흥과 및 무대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기획운영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생략)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섭외교육과·전시운영과·민속연구과·유물과학과 및 어린이박물관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민속연구과장·유물과학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생략)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획운영과·조사연구과·자료관리과·전시운영과·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조사연구과장·전시운영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
(생략)

② 국립한글박물관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10퍼센트-----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0명(4급 3명, 4·5급 2명, 5급 16명, 6급 16명, 7

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음악산업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1명, 6급 4명), 관광복지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업무를

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담당하는 1명(6급 1명), 양성평
등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
명) 및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인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
명(6급 1명, 7급 1명), 공무를 수
행하는 근로자의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안전·
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5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명,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
당) 1명, 행정주사 2명, 전문경
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5명,

③·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4명(6급 3명, 7급 1명)-----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8명
(4급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학예
연구관 2명, 4·5급 1명, 5급 1
명, 6급 3명, 7급 1명, -----

----- 가군 1명,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 담당) 3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 1명(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담당)]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다.

⑤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특수언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 2와 같다.

나군 8명)-----

-----.

----- 10퍼센트-----

-----.

⑤ -----

----- 2명(6급 1

명, 학예연구관 -----

-----.

⑥ -----

-----.

----- 10퍼센트-----

-----.

⑧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같은 표의 정원 중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⑧

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 2와 같다.

⑩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⑪ · ⑫ (생략)

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공

---. -----

----- 10퍼센트-----

-----.

⑨ -----

-- 별표 7의 정원 중 3명(6급 1명, 학예연구관 2명)-----

-----.

----- 10퍼센트-----

-----.

⑩ -----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학예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⑪ · ⑫ (현행과 같음)

⑬ -----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 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8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⑭ ~ ⑰ (생략)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4조제1항·제10조제2항·제24조제1항·제28조·제36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디지털소통관·국립국어원장·국립중앙도서관장·국립국악원장 및 국립민속박물관장을 말한다.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삭제

중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

--.

⑭ ~ ⑰ (현행과 같음)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10조제14항에 따른 디지털
소통기획과장
6. 제10조제16항에 따른 디지털
소통제작과장
7. 제14조제9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과장
- 7의2. 제22조제7항에 따른 어린
이박물관과장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주박
물관장
- 8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주
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9. 제25조제4항에 따른 언어정
보과장
10. 삭제
11.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국
립장애인도서관장
12. 삭제
13.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민
속국악원장 · 남도국악원장
14. 제40조제5항에 따른 전시운
영과장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u>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3</u>	+3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u> <u>기술서기관</u>	<u>3</u>	<u><삭 제></u>	-3
·	·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6</u>	+16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6</u>	<u><삭 제></u>	-16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u> <u>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u> <u>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u> <u>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42</u>	+42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 · <u><신 설></u>	· · <u>3</u>	+3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3</u>	<u><삭 제></u>	-3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 <u><신 설></u>	· <u>16</u>	+16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6</u>	<u><삭 제></u>	-16
·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 <u><신 설></u>	· <u>42</u>	+42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42</u>	<u><삭 제></u>	-42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u>	<u><신 설></u>	<u>1</u>	+1
<u>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u>	<u>1</u>	<u><삭 제></u>	-1
<u>관 또는 시설사무관</u>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u>	<u><신 설></u>	<u>1</u>	+1
<u>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u>	<u>1</u>	<u><삭 제></u>	-1
<u>관 또는 시설사무관</u>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국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 · <u><신 설></u>	· ·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 ·	<u>1</u> · ·	<u><삭 제></u> · ·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또는 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또는	<u><신 설></u>	<u>1</u>	+1
<u>과학기술서기관</u>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또는	<u><신 설></u>	<u>1</u>	+1
<u>과학기술서기관</u>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3]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또는	<u><신 설></u>	<u>1</u>	+1
<u>과학기술서기관</u>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9조의2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또는	<u><신 설></u>	<u>2</u>	+2
<u>과학기술서기관</u>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2</u>	<u><삭 제></u>	-2
·	·	·	
·	·	·	